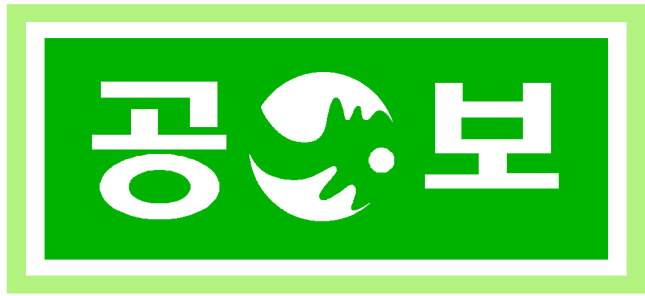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964 호 2015. 8. 26. (수)

고 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57호[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2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58호[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59호[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160호[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8

안 내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관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6 행정712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5 - 15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에코하우스(주) 대표 김완섭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82B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 8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계획 승인 내역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사업주체

가.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오션타워 524호

나. 성 명 : 에코하우스(주) 대표 김완섭

3) 사업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82B 일원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사 업 주 체	◦ 에코하우스(주) 대표 김완섭	
사 업 위 치	◦ 명촌동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82B	
대 지 면 적	◦ 6,625.30㎡	
건 축 면 적	◦ 1,428.4971㎡	
연 면 적	◦ 22,650.6374㎡	
건 폐 율	◦ 21.56%	
용 적 륜	◦ 237.37%	
동 수(주/부)	◦ 3동 / 6동	
세 대 수	◦ 141세대	
주 택 형 별	◦ 일반민영 아파트	
사 업 비	◦ 47,820,098 천원	

2. 사업시행기간 : 2015. 9. ~ 2017. 8.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동법 제14조 『건축신고』, 동법 제20조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4. 승인관련 서류 : 복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5 - 158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에코하우스(주) 대표 김완섭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83B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 8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계획 승인 내역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사업주체

가.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오션타워 524호

나. 성 명 : 에코하우스(주) 대표 김완섭

3) 사업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83B 일원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사 업 주 체	◦ 에코하우스(주) 대표 김완섭	
사 업 위 치	◦ 명촌동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83B	
대 지 면 적	◦ 9,215.30㎡	
건 축 면 적	◦ 2,092.2344㎡	
연 면 적	◦ 31,659.2140㎡	
건 폐 율	◦ 22.70%	
용 적 륜	◦ 244.97%	
동 수(주/부)	◦ 3동 / 6동	
세 대 수	◦ 203세대	
주 택 형 별	◦ 일반민영 아파트	
사 업 비	◦ 66,747,317천원	

2. 사업시행기간 : 2015. 9. ~ 2017. 8.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동법 제14조 『건축신고』, 동법 제20조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4. 승인관련 서류 : 복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5 - 15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에코하우스(주) 대표 김완섭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84B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 8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계획 승인 내역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사업주체

가.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오션타워 524호

나. 성 명 : 에코하우스(주) 대표 김완섭

3) 사업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84B 일원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사 업 주 체	◦ 에코하우스(주) 대표 김완섭	
사 업 위 치	◦ 명촌동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84B	
대 지 면 적	◦ 4,546.39㎡	
건 축 면 적	◦ 1,313.4073㎡	
연 면 적	◦ 10,989.4073㎡	
건 폐 율	◦ 28.89%	
용 적 륜	◦ 184.07%	
동 수(주/부)	◦ 2동 / 7동	
세 대 수	◦ 69세대	
주 택 형 별	◦ 일반민영 아파트	
사 업 비	◦ 24,903,714천원	

2. 사업시행기간 : 2015. 9. ~ 2017. 8.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동법 제14조 『건축신고』, 동법 제20조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4. 승인관련 서류 : 복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 2015 - 16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에코하우스(주) 대표 김완섭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진장 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85B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 8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계획 승인 내역

사업시행자

1)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 사업주체

가.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오션타워 524호

나. 성 명 : 에코하우스(주) 대표 김완섭

3) 사업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85B 일원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사 업 주 체	◦ 에코하우스(주) 대표 김완섭	
사 업 위 치	◦ 명촌동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 85B	
대 지 면 적	◦ 10,123.47㎡	
건 축 면 적	◦ 2,822.8553㎡	
연 면 적	◦ 27,768.9754㎡	
건 폐 율	◦ 27.88%	
용 적 륜	◦ 211.74%	
동 수(주/부)	◦ 3동 / 6동	
세 대 수	◦ 182세대	
주 택 형 별	◦ 일반민영 아파트	
사 업 비	◦ 58,722,011천원	

2. 사업시행기간 : 2015. 9. ~ 2017. 8.

3.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등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동법 제14조 『건축신고』, 동법 제20조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 등 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되어, 주택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의제 처리된 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4. 승인관련 서류 : 북구청(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건축주택과(☎241-8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